

#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견 (의안번호 제568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9. 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9. 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9. 17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경지정리사업 시행전의 읍면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동일 경계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불편사항을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와 각종 행정업무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

### 3. 의견 청취내용

- 불합리한 읍면 행정구역(경계선)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찬반 여부
- 불합리한 읍면 행정구역(경계선) 조정계획(안)에 대한 기타의견

### 4. 의견을 듣게 된 경위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4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읍면의 행정구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필요적 절차)
- 읍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 및 기타의견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리동간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종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경작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경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